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9. 13 선고 2021가단20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6. 3.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5. 20. 접수 제81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278433호로 ‘D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의 아버지인 E는 2016. 3. 2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D를 포함한 8명의 자녀와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으며, D의 법정 상속지분은 2/19이다. 피고와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0. 5. 2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0. 5. 20. 접수 제8124호로 피고 앞으로 ‘2016. 3.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9지분 가액 1,852,631원(= 17,600,000원 × 2/1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별지 목록 다항 기재 부동산 중 2/19 지분 가액 96,429원(= 1,320원/㎡ × 694㎡ × 2/19)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시장,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상속받게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액은 71,057,534원[= 10,000,000원 × (27 + 275/365)년 × 22%]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의 가액이 합계 1,949,060원(= 1,852,631원 + 96,429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의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채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정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가. 경상북도 영주시 대 1709㎡

나. 경상북도 영주시

시면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2㎡

부속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9.4㎡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5.17㎡

다. 경상북도 영주시 입야 694㎡

(이상 현 소유자 , 대구지방법원 영주동기소 관할)

